

##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408
----------	------

제출년월일 : 2010년 1월 일  
제출자 : 제천시장

### 1. 제안이유

- 충청북도 세정과-14958 (2009.11.30)호 및 충청북도 세정과-205 (2010.1.6)호에 의거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른 후속 조치

### 2. 주요내용

- 화물 적재공간 바닥면적 2m<sup>2</sup>미만 차량에 대하여 화물차이면서 승용차로 과세되는 문제 개선 ⇒ 화물차 세액적용
- 대상차량은 화물 또는 화물·승용 겸용차량으로 대부분 생계용 목적에 사용되고 있어 서민경제 지원 효과 기대
-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소세를”을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 세 종업원분을”로 문구 수정
- 시세감면조례 개정(2009.12.31)에 따른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삭제

### 3. 의안전문 : 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5. 관계법령 : 붙임

-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
- 충청북도 세정과-14958 (2009.11.30)호 감면조례 표준안 시달
- 충청북도 세정과-205 (2010.1.6)호 감면조례 개정안 통보

#### 붙임 1. 의안전문 1 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 부
3. 관계법령 1 부
4.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사본 1 부

##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조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제7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 중 “사업소세를”을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 제18조의2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 계산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헌	개정안
<p>&lt;신 설&gt;</p>	<p>제18조의2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 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u>「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 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 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하 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 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에 대 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 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u></p>
<p>제7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 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 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p>	<p>제7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  -----  -----  -----  -----  ----- <u>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u></p>
<p>제21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 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 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 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 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 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 비 율에 대하여는 그려하지 아니하다.</p>	<p>제21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  -----  -----  -----  -----  ----- <u>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원분을 -----</u></p>



## □ 관계법령

### 지방세법 [일부개정 2009.6.9 법률 9780호]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8조 (수익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불균일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6, 1998.12.31, 2008.2.29>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9.9.21 행정자치부령 107호]

**제2조 (과세면제등 허가신청)** 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하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관계조례안, 관련 사업계획서·예산서 및 사업수지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세면제 등을 필요로 하는 사유
2. 세목 및 세율
3.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부과방법
4. 과세면제 등의 기간 및 그 사유
5. 과세면제 등에 의한 세수입의 증감추계 및 재정상의 영향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잘 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 충청북도

BIG  
경제특별도 충북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변경된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례 표준안 통보

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5027(2009. 11. 27)호의 이첨입니다.

2.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변경된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불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금년 말까지 지방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2010.1.1일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중에 조례개정이 불가할 경우 조치사항(2010.1.1일 이후 조례개정 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조례개정(시행일 '10.1.1.소급적용)을 하고, '10.1.1 일 이후 조례개정 전에 말소 등으로 인한 수시부과 사유발생시(지방세법 제196조의6제2항)에는 조례개정 이후에 화물세율로 과세하도록 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1월중 연세액 신고납부(승용세율)는 하지 않도록 안내하기 바람.

3. 아울러, 지방세법(2005.12.31일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9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은 내년 상반기 중에 개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화물자동차 과세특례제도 검토결과 1부.  
2. 감면조례표준안 1부. 끝.

## 충청북도지사

수신자 청주시장(세정과장), 충주시장(세정과장), 제천시장(세정과장), 청원군수(재무과장), 보은군수(재무과장), 옥천군수(세정과장), 영동군수(재무과장), 증평군수(재무과장), 진천군수(재무과장), 괴산군수(재무과장), 음성군수(재무과장), 단양군수(재무과장)

주무관

세정팀장

세정과장

협조자

시행 세정과-14958 ( 2009.11.30. ) 접수 세정과-21059 ( 2009.11.30. )

우 360765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청북도청 / <http://www.cb21.net/>

전화 043-220-2754 / 전송 043-220-2759 / [wiseyumi@korea.kr](mailto:wiseyumi@korea.kr) / 공개

생활공감 국민행복

---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개선**

---

2009. 11.



지방세제관실  
지방세운영과  
행정안전부

## 목 차

I . 과세특례제도 현황 .....	1
II . 개선 필요성 .....	2
III . 개선 방안 .....	3
IV . 향후 계획 .....	5
〈참고1〉 분류기준 변경 차량 과세제도 현황 .....	6
〈참고2〉 감면조례표준안 .....	7

## I 과세특례제도 현황

### □□ 자동차세 개요

- 세율체계 : 개별법령의 차량구분기준에 따라 자동차세도 구분과세

차종	차종 구분기준 법령	지방세법상 자동차세 과세기준
승용	자동차관리법	배기량 × cc당 세액 (cc당 80원 ~ 220원)
화물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과세(28,500원 ~ 157,500원)
승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모 등에 따라 차등과세(65천원 ~ 115천원)

- 자동차 등록대수 및 세수현황

- 총 1,679만대 2조 9,378억원으로 이중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구분 기준이 변경된 차량은 36만대, 세수는 101억원

구 분	계	승용	승합	화물	화물→승용 기준변경	특수
대수(만대,%)	1,679(100)	1,248(74.3)	110(6.6)	280.3(16.7)	35.7(2.1)	5.3(0.3)
금액(억원,%)	29,378(100)	27,986(95.3)	373(1.3)	871(3.0)	101(0.3)	38(0.1)

### □ 과세특례 제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03.11월)으로 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 2m<sup>2</sup>미만 차량은 '06.1.1일 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
  - 다만, '05.12.31일 까지 등록한 차량은 화물자동차로 계속 등록
- 우리부는 '05년 말까지 등록한 차량에 대해 '06년 이후 등록된 차량과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승용차 세액 수준으로 인상하는 과세특례규정을 지방세법 부칙에 신설('05.12월)

\* 2m<sup>2</sup>미만 차량: '05년말 등록 화물세액 < '06년이후 등록 승용세액→'05년말 등록차량도 승용세액 적용

#### « 대상차종 및 과세특례 규정 내용 »

- 대상차종 : 갤로퍼, 갤로퍼밴, 다마스밴, 레이서, 레토나, 레토나밴, 록스타R2, 록스타R2밴, 르망밴, 무쏘픽업, 엑셀밴, 카니발밴, 코란도밴, 타우너, 포니픽업, 프라이드밴 등 16종 36만 여대
- 특례내용 : '06~'09년간은 화물세율 유지→ '10년 화물세액 +승용세액과 화물세액간 차액의 33%→ '11년 화물세액 + 차액의 66%→ '12년 이후 승용세율

## II 개선 필요성

### □□ 과세형평성 문제

- '06년 이후 2m'미만 화물차량이 단종됨에 따라 등 차량의 분류 기준 변경에 따른 조세 형평성 문제는 해소
- 대신, '06년 이후 동종차량이 2m'이상으로 형식변경 출시되어 계속 화물차세율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 '05년까지 등록한 2m'미만 차량만 단계적 승용세액을 적용받게 되어 새로운 과세 불형평 문제 발생 예상

### □ 급격한 세부담 증가

-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자동차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 '10년부터 승용차 세율을 단계적으로 적용받게 되어 세부담이 기존 화물차 세액 대비 4~14배 증가

#### « 사례 : '00년 신규등록한 무쏘 퍽업(2,874cc) »

- '09년까지 화물차 세율(28,500원) 과세 → '10년 174,000원(화물차의 6.1배) → '11년 283,840원(9.9배) → '12년 410,980원(14.4배)

### □ 등록과 과세간 불일치 문제

- 등록과 과세간 불일치(자동차관리법 : 화물차, 지방세법 : 승용차)에 따라 납세자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
- ※ 보험료 : 화물 > 승용, 정기검사 : 화물(1년주기), 승용(4년유예후, 2년주기),  
자동차세 : 화물 < 승용, 과태료 : 화물·승용 동일

### III 개선 방안

#### □ 대안별 검토

- ◆ 제1안 : 화물차세율 적용(先 감면조례, 後 지방세법 부칙 개정)
- ◆ 제2안 : 현행 단계적 인상세액의 50% 감면(감면조례 제정)

#### 제1안 화물차세율 계속 적용

##### « 장점 »

- '06년 이후 해당차량이 2m<sup>2</sup> 이상으로 구조변경·출고되어 과세특례 신설 필요성이 없어진 과세여건 변화 반영
- 자동차 등록(자동차 관리법)과 자동차세 과세(지방세법)간의 불일치 문제가 해소되어 행정의 통일성 확보
- 화물차이면서 승용차로 과세되어 세부담이 4~14배 증가되는 문제 해소
- 대상차량은 화물 또는 화물·승용 겸용차량으로 대부분 생계용 목적에 사용되고 있어 서민경제 지원 효과 기대

##### « 단점 »

- 부칙규정대로 단계적 인상시 500~1,200억원의 세수증대효과가 있으나, 1안의 경우 세수 증대 효과가 없음  
※ '10년 ↑508억원, '11년 ↑900억원, '12년 ↑1,206억원

**제2안 현행 단계적 인상세액의 50% 감면**

« 장 점 »

- 10인 이하 승합차에도 도입한 사례가 있어 적용이 용이

※ 승합→승용으로 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4년간 과세유예→2년간 단계적 인상 지방세법 부칙을 신설, 단계적 인상액은 감면조례로 50% 감면

- 납세자의 자동차세 급증부담이 50% 경감

- 자동차세수가 200~557억 원 증가

※ '10년 ↑203억 원, '11년 ↑399억 원, '12년 ↑557억 원

« 단 점 »

- 과세특례 사유가 소멸되었는데도 특례가 사실상 유지되는 문제

※ 10인이하 승합차는 분류기준 변경후에도 계속 생산되어 과세특례 필요성이 있으나, 2m<sup>2</sup> 미만 화물차는 분류기준 변경 이후 생산이 중단되어 과세특례 적용 필요성 소멸

- 자동차 등록과 과세간의 불일치 문제 상존

- 납세자 세부담이 일부 경감되었으나, 여전히 세부담은 화물차 기준 2~7배 증가하게 되어 강력한 조세저항 예상

**□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의견**

- 16개 시도 중 10개 시도가 화물차 세율 유지(1안) 의견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 자동차업계 및 관련협회는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차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화물차 세율로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1안)

## □□ 검토의견 : 1안 건의

- 과세특례규정을 신설한 사유인 분류기준 변경 전후 동종 차량간에 과세형평성 확보 필요성이 소멸되었고,
- 등록과 과세간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동 차종이 주로 생업용으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 세율의 계속 적용이 바람직

## IV 향후 계획

- 우선 감면조례를 통해 '10년은 화물차 세율을 적용
- '10년 상반기 중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토록 지방세법 부칙 개정

**참고 1****분류기준 변경 차량 과세제도 현황**

구 분	화물→승용 (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 2㎡ 미만)	승합(7~10인승)→승용	
		일반 7~10인승	7~10인승 전방조종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정 : '03.11월</li> <li>시행 : '06.1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정 : '96.12월</li> <li>시행 : '01.1월</li> </ul>	좌동
등록관련 유예조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5. 12. 31일 까지 등록한 경우는 화물차로 등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0.12.31까지 승합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은 승용으로 변경 등록가능</li> </ul>	좌동
분류기준변경 후 생산차량 현황 및 등록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미만 화물차는 '06년이후 단종되고</li> <li>동종차량은 2㎡ 이상으로 변경하여 출고(화물차 등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속 생산</li> <li>승용 등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4년 이후 단종</li> <li>승용 등록</li> </ul>
지방세법 부칙 특례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6~'09년 4년간 화물세율적용</li> <li>'10~'11년 2년간 단계적 인상</li> <li>'12년 이후 승용세율적용 ※ '05.12월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1~'04년 4년간 승합세율 적용</li> <li>'05~'06년 2년간 단계적 인상</li> <li>'07년 이후 승용세율 적용 ※ '99. 12월 신설</li> </ul>	좌동
감면조례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5~'07년 3년간 세액의 50% 감면</li> <li>'08~'09년 2년간 단계적 인상 ※ '10년 승용세율 적용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5~'10년간 승합세율 적용</li> <li>'07.12.31이후 등록한 차량은 '08~'09년 단계적 인상</li> </ul>

\* 전방조종자동차 : 7~10인승 비영업용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운전대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이내인 자동차

##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

제○○조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 제00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관련문서	표준안 수정통보(사유)	조치내용
2010년도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 통보 도세정과-205(2010.1.5)	제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 중 “사 업소세를”을 각각 <u>“주민세 재산분 및</u> <u>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u> 로 한다.	· 일부 개 정 조례에 반영
검토자 의견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2009.12.31)에 따라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삭제	· 일부 개 정 조례에 반영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 충청북도

**BG**  
경북 충북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 개정안  
통보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9(2010.1.5)호의 이첨입니다.

2.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에 따라,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을 불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지방세법	사업소세 감면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기업도시개발구역에 <u>입주하는</u> <u>기업</u> 에 대한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에 <u>창업하거나 사업장을</u> <u>신설(기존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u> <u>하는 기업</u> 에 대한 감면

\* 유의사항 : 불임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0.1.1.부터 적용됨을  
유의할 것

불임 : 감면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 충청북도지사

수신자 청주시장(세정과장), 충주시장(세정과장), 제천시장(세정과장), 청원군수(재무과장), 보은군수(자  
무과장), 옥천군수(세정과장), 영동군수(재무과장), 증평군수(재무과장), 진천군수(재무과장), 괴스  
군수(재무과장), 음성군수(재무과장), 단양군수(재무과장)

주무관

세정팀장

세정과장

협조자

시행 세정과-205 ( 2010.01.06. ) 접수 세정과-190 ( 2010.01.06. )

우 360765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청북도청 / <http://www.cb21.net/>전화 043-220-2754 / 전송 043-220-2759 / [wiseyumi@korea.kr](mailto:wiseyumi@korea.kr) / 공개

## 감면조례 일부개정(안)

「시·군세 감면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 중 “사업소세를”을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한다.

제28조 중 “입주하는 기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천시 공고 제 2009 - 1592

제천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2. 21

제 천 시 장

##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조례명 :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개정이유

- 충청북도 세정과-14958 (2009.11.30)호에 의거 「2010년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른 후속 조치

### 3. 주요내용

- 화물 적재공간 바닥면적 2m'미만 차량에 대하여 화물차이면서 승용차로 과세되는 문제 개선 ⇒ **화물차 세액 적용**
- 대상차량은 화물 또는 화물·승용 겸용차량으로 대부분 생계용 목적에 사용되고 있어 서민경제 지원 효과 기대

### 4. 개정근거 :

-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
- 충청북도 세정과-14958 (2009.11.30)호 감면조례 표준안 시달

### 5. 개정조례안 : 별지참조

### 6. 입법예고 : 2009. 12. 21 ~ 2010. 01. 10(20일간)

## 7.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월 10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세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564, FAX 641 - 5579 담당자 : 엄 복 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지방세무주 사보	세정팀장	세정과장			
엄복철	유흥열	1/10 반병렬			

## 입법예고 결과보고서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공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입법예고 조례명 :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공고번호 : 제천시공고 제2009-1592호
3. 공고기간 : 2009. 12.21. ~ 201. 1. 10(20일)
4. 공고매체 : 제천시보 및 제천시홈페이지(입법예고)
5. 공고내용 : 별도불임
6. 공고결과
  - 조회수 : 31명
  - 의견제시자 : 없음

붙임 : 공고안 1부(붙임) 끝.